

2018년 과천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 9. 12. ~ 9. 18.(5일간)
- 감사분야 : 2015년 6월 이후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 감사결과

감사결과			처분계획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원)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천원)	시정	주의	징계	경고	주의	회수	과태료
10건	10건(69명)	없음	4	6	1	4	64	없음	없음

II 주요 지적사항

■ (인사·행정)

① 회계직공무원 사무인계인수서 미작성

- 「경기도 사무인계인수 규칙」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회계직 공무원(지출원 등)인 회계장비팀장이 인사이동 등으로 그 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전임자로부터 각종 서류 및 장부, 회계 공인, 주요 비품, 차량 및 장비,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등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확인 후 인수받아야 함에도 2017년 00월 00일 회계장비팀장 인사이동이 있었는데도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관련규정】· 경기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2조(적용범위),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및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98조(출납사무의 인계) 및 제99조(인계의 절차)

② 육아휴직공무원 복무관리 소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같은법 임용령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8호)에 의하면, 소속 인사부서에서는 유학휴직, 가사휴직, 배우자 외국동반 휴직, 기타 휴직 등에 대하여는 휴직 후 6개월마다 휴직목적 위반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되어있고, 육아휴직자는 유아 양육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관서에 복직 신고를 하며, 소속 기관장 요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휴직업무의 통일을 기하고 휴직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휴직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소방관서에 전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 육아휴직을 한 직원들이 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에게 육아휴직에 대한 복무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관련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및 같은법 임용령 제38조의 17(휴직자 복무관리)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8호)

■ (재난대응·안전)

① 심장충격기 및 감염관리실 일일점검 미 실시

-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26조(소방장비의 점검방법 등) 제1항 2호에 의하면 “장비운용자가 제조업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점검하며, 그 밖의 소방장비는 일일점검·정비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재난대응과-10333호(2013.06.11.)호 「구급품질개선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기록지 작성지침」에 의하면 운영중인 자동제세동기에 대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재난대응과-1744(2015.01.22)호 「119감염관리실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준 알림」에 의하면 119감염관리실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를 위하여 감염관리실 내 운영장비에 대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음에도,
- 구급대원 ☆☆☆ 등 00명은 감사대상기간 동안 교대점검을 하면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및 감염관리실 일일점검을 총 44회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

②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미작성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감염관리대책)에 의하면 구조구급대원은 근무중 위험물·유독물 및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국민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 등은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를 접촉한 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일부터 15일 동안 감염성 질병 발병 여부를 추적·관리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보고서)에 따라 근무 중 위험물·유독물 및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의 접촉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 서식의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구조대원 ☆☆☆ 등 00명은 감사대상기간동안 감염성 질병(결핵, 폐렴 등) 접촉 후 작성하여야 할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를 00회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

【관련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감염관리대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 (예산·회계)

① 세입세출외현금 업무처리 부적정

- (세입세출외현금 지출결의서 분실) 지출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는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15년부터 00건 000백만원의 세입세출외현금 지출 업무를 처리하면서 세입세출외현금 지출결의서를 분실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장부 및 증명서류 관리를 소홀히 함. (횡령·유용은 없음)
-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처리 지연) 수납금의 납입은 도 금고 소재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도 금고로 납입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었으나, 본부 청문감사담당관에서는 회계

담당자의 상시 은행출장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이후로는 주1회 세입조치 하도록 완화했음에도,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0건 000천 원을 짧게는 00일에서 길게는 00일까지 지연하여 세입조치 함.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날인 누락)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지로 같음할 수 없으며,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업무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 세입세출외 현금 실무담당자는 2016년 직원 원천공제금 납부 등 00건 000천원을 출납하면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납부 및 반납처리 함.

【관련규정】· 지방회계법 52조(회계장부의 비치와 보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수납금의 납입) 및 제60조(금고에 둘 장부)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제3조의4(세입세출외현금 관련 회계공무원 분리) 및 제57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 본부 청문감사담당관-7854(2015.9.10.)호『예산·회계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알림』

■ (예방·민원)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 신축 건축물인 ★★★ 건물의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일 이후에 자격

증을 취득하였음에도 선임신고 업무를 처리하였고,

- 또한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사용승인일자 확인 없이 선임신고 업무를 처리 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한을 6일 초과 하였음에도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 없이 처리 함.

【관련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화재취약대상 호스릴 소화전 설치 추진

일반현황

- 위 치 : 과천시 과천동 209번지 일원(약 15,000평)
- 비닐하우스 : 180동 (주거용 80, 화훼용 100)
- 소방시설 : 소화전 2, 소화기보관함 3, 단독경보형감지기 393개 등

현 실태 및 문제점

- 비닐·가연성 보온재 등의 다량 사용으로 화재시 급격한 연소확대 우려
- 정비되지 않은 농로의 취약성으로 인한 초동대처 미흡

추진경과

- 소방서장 취약대상 파악 후 시장·부시장 면담하여 필요성 건의(7월)
- 과천시 안전총괄담당관 안전도시팀과 설치 내용 협의(8월)
- 기존 소화전(2개소)에 호스릴소화전 (150m) 우선설치(10월중 설치 예산 확보)
- 추가 소화전(1개소) 및 호스릴소화전함 설치(11월 중 설치 예산 확보)
- ※ 골별마을 안내지도 (1,000장) 및 표지판 (93개) 제작 배부 - '18. 7월

호스릴소화전 설치 위치도

